법적용에서의 법률상추정에 대한 일반적리해

윤 종 철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민사분쟁해결에서 재판소가 분쟁사건의 사실사정을 확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으로 규제된 사실인정의 기준에 따라 사실사정을 정해놓고 그와 반대되는 립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판소가 그 추정에 따라 사실을 확정하는것을 말한다.

법적용에서의 법률상추정문제는 증거로 립증되지 않는 당사자들사이의 민사분쟁사건을 재판소가 해당한 사실사정을 법이 정한데 따라 추정할수 있는 법적기준에 대한 문제이면서 또 그에 따라 불리한 법적부담을 지게 된자에게 그를 반증할 부담을 지우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률상추정규범의 적용은 그에 따르는 반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재판소가 법이 정한 추정기준에 따라 제때에 해당 판결을 내림으로써 민사분쟁해결의 지연을 막고 사회경제생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하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판기관은 사건취급처리에서 마지막공정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재판소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데 따라 사건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바로 처리될수도 있고 잘못 처리될수도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관 제10권 124~125폐지)

사건을 옳바로 취급처리하는것은 공화국의 모든 법기관들에 있어서 다같이 중요하지 만 특히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해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판소들에 있어서 더욱 중 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원래 제기된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모든 판결은 공화국의 이름으로 내리는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로서 그것은 언제나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근거있게 정확히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국가와 법의 권위를 보장할수 있고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에 기초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정치적지반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으며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사회경제생활의 안정과 끊임없는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된다.

법의 적용은 권한있는 국가기관들이 법규범의 일반적요구를 구체적인 사회관계에서 실현해나가는 권력적활동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재판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제기된 사건에 대한 사실사정을 확정하고 그에 적합한 법규범을 선택, 적용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당사자들의 법적권리와 의무를 확정한 다음 해당 법적책 임을 부여한다.

모든 법을 적용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제기된 사건의 사실사정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이다. 그것은 제기된 사건의 사실사정이 확정되여야만 그에 적중한 법규범을 옳게 선택, 적용하여 최종적인 법적해결을 내릴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소송제기당시 사건의 사실사정은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잘 알려져있지만 그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소로서는 전혀 생소한 사실로 된다. 그러므로 제기된 사건의 사실사정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은 증거를 통해서만 확정할수 있으며 그러한 확신에 기초해서만 해당 사건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수 있게 된다.

제기된 사건의 사실사정이 모든 경우에 증거를 통해서만 확정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데 그들이 자기 주장을 립증하지 못하거나 립증할 당

사자들이 사망하거나 또는 증거물이 류실되는 등 증거를 통한 립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적 지 않다.

이런 경우 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을 놓고 그의 해결을 무한정 끌수 없으므로 그것이 형 사사건인 경우에는 예심이나 수사단계로 반송하거나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사이의 민사분쟁사건인 경우에는 사회경제 생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설정된 민법의 사실추정규범에 기 초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제기된 민사분쟁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고 하여 사건의 심리조사해결을 무한정 끌면서 언제까지나 미결건으로 남겨놓는것은 소송실천상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증거에 의한 립증이 불가능한 경우 증거에 의거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사정을 확정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모든 소송사건의 심리조사해결에서 사실사정에 대한 확정은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말할수 있다. 하나는 소송사건의 심리조사해결의 기본방법인 수집된 증거를 리용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미리 정했거나 또는 법기관들이 이미 알고있거나 경험하였던 사실에 기초한 해당 사실의 추정방법이다.

이렇게 증거가 없다 해도 추정되는 법률사실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것은 소송효률을 높이고 안정된 사회경제법률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건조사해결에서의 추정은 증거에 기초한 증명과는 달리 법률 혹은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볼 때 해당 사실사정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하여 어떤 사건의 사실사정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대한 반대립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미 정한 사실사정에 따라 사건해결의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확정의 방법이다.

사건의 사실사정에 대한 추정은 다시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으로 더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추정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이 법률상의 추정이다.

사실상의 추정은 사건의 수사, 예심이나 재판심리과정에서 소송담당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가상적인 판단으로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실례로 수사일군이나 예심원이 취급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으로 서 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 얻어진 론리적추리에 따르는 가상적인 판단이며 앞으로의 사 건조사를 전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의 사실사정에 대한 추정에서 직접 그것이 법적효과를 일으키는 추정은 법규범이 정한데 따르는 법률상의 추정이다.

실례로 민법전 제40조 립법적해석의 《현실적인 점유는 적법적인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적인 점유가 비법적이라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것을 적법적인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43조 2항의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것으로 본다.》, 민법전 제241조 2항의 《계약 또는 법을 어긴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것으로 본다.》를 들수 있다.

법률상의 추정에서 류의하여야 할것은 우선 그것을 증거가 없어 사건립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할수 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법률상의 추정이 증거가 없어 사건립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하여

그러한 사건의 사실사정들은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법규범이 규제한데 따라 사실을 단정해놓고 그에 대한 반대립증이 없는 한 재판소가 해당 추정규범이 정한데 따라 사건의 사실사정을 인정하고 사건해결을 내릴수 있게 하는 추정이기때문이다.

법률상의 추정에서 류의하여야 할것은 또한 그것을 민사사건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상추정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과정에 다같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추정과 구별된다.

그것은 사건의 사실사정에 대한 재판소의 확정은 그것이 민사건인가 아니면 형사건인 가에 따라 그 립증방법과 기초가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이것은 주로 해당 형사법률제도와 민 사법률제도의 규제대상과 그가 추구하는 목적에서의 차이에 기인된것이다.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관계를 규제하는 법이고 형사소송법은 범죄사건의 수사, 예심, 기소, 재판수속과 집행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공화국형사법은 반범죄투쟁을 통하여 국가사회생활에서 엄격한 법질서의 확립과 그의 공고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보장하는것을 통 하여 개별적인 모든 공민들의 리익도 보장하게 된다. 때문에 국가와 사회경제질서를 엄중 하게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하여 재판소에 형사소송심리와 판결을 요구하는 형사소추는 국 가검사의 기소에 따라 진행되며 사건심리결과에 따르는 범죄의 엄중성정도에 의하여 사형 이나 무기 또는 유기 로동교화형을 비롯한 인신적강제도 가하게 된다.

민사법과 구별되는 형사법의 이러한 차이로 하여 기소검사가 범죄자가 어떠한 형벌로 인신적강제를 가해야 할 범죄를 감행하였는가를 기소할 때에는 재판소앞에 과학적인 증거 로써 기소사실을 립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통한 립증이 없이는 재판소에 형사법의 적 용을 요구할수 없다.

형사재판심리에서 기소측의 주장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완전히 립증되면 재판소는 그에 대한 자기의 확신에 기초하여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소측의 주장이 재판심리에서 증거로 립증되지 못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형사사건을 예심이나 수사단계로 반송하거나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형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심리에서는 범죄에 대한 모든 기소사실들이 하나도 남 김없이 립증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그 어떤 형벌도 적용할수 없으며 따라서 형사법상으 로 볼 때 법률상의 추정문제란 제기될 여지가 없게 된다.

일부 경우 형사법에서도 그것이 민사관계와 련관되는 한에 있어서 법률상의 추정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실례로 국가소유재산을 훔친자가 그의 소비처를 립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략취당한 국가소유의 재산은 그것을 훔친자에 의하여 소비된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그리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의 기본추정대상은 원래 민사법률관계 대상이다. 즉 국가소유재산이 개인에게 점유가 이전된 사실에 기초하여 그 개인이 국가소유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다는것이 립증되지 않는 한 그가 비법처분한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 서로의 독자성에 기초하는 민사법률관계상의 분쟁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사정들이 증거로 립증되지 못해도 그것들을 추정하여 당사자들사이에 권리와 의무, 리익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지우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이것은 공화국민법이 개별적인 민사관계 당사자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법률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고 민사소송법은 민사관계 당사자들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 판수속관계를 규제하는 법인것과 관련된다. 민사법률관계에서 개별적인 당사자들은 모두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로 나설수 있고 또 그로 하여 소송에 인입되게 된 피고로 나설수도 있다. 결과 민사분쟁사건해결에서 그 당사자들은 서로 다투는 사실사정에 대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증거로 립증할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민사법률관계에서는 실제적인 사실사정에 따라 정확하게 분담되여야 할 권리와 리익을 놓고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사정이 증거로 확정되지 않아도 사 건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당사자들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제때에 분담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그것은 증거가 없는것으로 하여 응당히 개별적인 민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권리와 리익의 분담을 무한정 연기한다면 그것은 사회경제생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 하는데 부정적영향을 주기때문이다.

따라서 민사분쟁사건해결에서는 사건의 사실사정이 증거로 립증되지 못해도 지난 기간 해당 사건들과 같은 사실사정들에서 많이 존재하였던 가능한 조건들에 기초하고 당사자들사이의 권리와 리익의 분배에서 불공평을 피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건들을 추정하여 규제한 민법상의 조항들에 의거하게 된다.

우리는 법적용에서 법률상의 추정에 대한 리해를 옳바로 가지고 우리 당의 사법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다.